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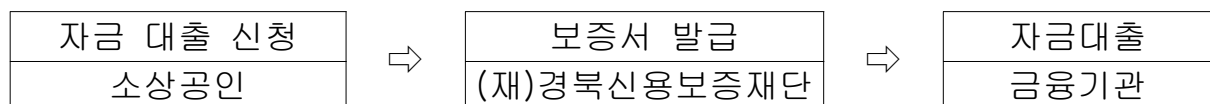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재)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 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개요
 - 출연기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 대 표 자 : 이사장 박 진 우
 - 소 재 지 : 구미시 이계북로 7
 - 출연예정액 : 금1,000,000천원(작년대비 600,000천원 증액)
 - 출연금 사용처 :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

○ 주요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보증 한도까지
- 지원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운수업자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청년창업자 지원 신설 : 1명당 5천만원 이내
 -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
- 상환방법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심사기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촉여부 심사 후 특례보증
- 지원방법 : 시 출연금 10억원의 10배수인 100억원을 (재)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 연 금	1,900	100	200	400	400	400	400
보증금액	18,707	1,000	2,000	4,000	4,000	4,000	3,707
보증업체수	1,150	66개소	119개소	249개소	232개소	248개소	236개소

○ 출연의 필요성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5억원), 1회 추경(5억원)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재)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

- 기관명(주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시 이계북로 7)
- 기관소개
 -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기능
 -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상담
 - 창업정보제공 : 관내 업소분포, 유망업종, 창업트랜드
 - 창업적성 검사 및 사업성 평가
 - 인허가 절차 안내,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상담

5. 검토의견

○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이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증금액 증가, 청년창업자 지원으로 출연금이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합하다고 판단됨.